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의 평가와 향후과제

— 구두보고를 중심으로 —

한 동 호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3-21

2013년 9월 17일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이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¹⁾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위원장은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여 구두보고(oral update)를 하였다. 2013년 3월 21일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²⁾를 통해 설립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3년 7월 첫 모임을 가지며 출범한 이래, 8월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면담 및 비공개 인터뷰를 실시했다. 또한 9월의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활동 결과에 대해 구두보고를 진행하였다. 앞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제68차 유엔 총회에서의 구두보고를 거쳐 2014년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최종 서면보고서(written report)를 제출하게 된다. 이 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근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구두보고를 중심으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평가와 북한의 대응

2013년 5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 헨첼(Henczel) 주제네바 폴란드 대사는 마이클 커비 위원장을 비롯,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마

1)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발행하는 모든 문서에 한국명(유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과 영어명(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을 병행 표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A/HRC/RES/22/13.

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을 북한인권 조사위원으로 임명하였다.³⁾ 조사위원회의 구두보고는 5월 7일 처음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그동안의 조사 활동을 중간 점검하며, 향후 조사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구두보고는 먼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systematic)이고 광범위(widespread)하며 중대한(grave)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임무를 재차 상기하였다. 특히 인권침해 사항 중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되는 침해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규명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책무를 강조하였다. 또한 구두보고에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방법에 있어서 독립성(independence) 및 공정성(impartiality) 외에도 투명성(transparency)과 개방성(open procedure)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의 특징 중 하나인 공청회(public hearings) 개최로 연결되어 북한인권 침해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개방적 조사를 가능케 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사위원회 활동의 성패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 방문 및 당사국의 협조가 결여된 상황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혹은 진상조사단(Fact-Finding Missions)들과는 차별화된 방법론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조사위원회 혹은 진상조사단 등과 달리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공청회 개최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열의를 나타내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공청회 개최와 관련 증인자 보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조 속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방문, 면담, 공청회, 기자회견 등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방한 활동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전개되었다고 평가된다. 공청회 이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청회 실황을 게시하는 등 북한인권 침해조사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조하였다.⁴⁾

이번 구두보고에는 공청회 관련 증언 요약과 이에 대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평가가 제시되어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공청회와 증언 청취를 통해 북한 내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2013년 보고서에 명시된 식량권 침해, 정치범수용소 관련 침해,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 등 9가지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그 결과 구체적 인권침해로 외국공연을 보거나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고문 및 감금된 사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막는 통제 및 정보왜곡, 강제송환 탈북자에 대한 고문, 성폭력, 비인도적 대우 및 자의적 구금, 납북자의 가족이 당하는 고통 등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사안들이 북한내에서 전반적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라

3)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의 배경과 의의와 관련해서는 조정현, 김수암, 한동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의의 및 과제," Online Series 13-09 (2013, 3, 26) 참조.

4)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 참조.

고 평가하였다. 특히,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연좌제(guilt by association)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증언이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구성하는 대규모의 패턴(large-scale patterns)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도 공청회와 비공개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조사자료를 통해 9개 유형의 인권침해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평가하였다.

구두보고 내용을 볼 때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의미한 중간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전반적으로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결정, 구성, 출범, 청문회 개최 등 그동안의 활동 전반에 대해 북한 정부는 초지일관 거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5월 10일자 공문을 통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의 협력을 전적으로 거부하였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3년 6월 18일 북한 대표부와 회담을 요청하고, 7월 5일에는 방북 허용을 통한 현장 방문 등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7월 16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재확인하였고,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게 될 공청회에 북한 측 대표를 초청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뿐 아니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면거부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향후과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향후 계속될 조사 및 면담을 통해 구두보고에서 밝힌 잠정 결론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내년에 최종보고서에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첫째, 북한인권 침해 관련 현존 자료의 양적·질적 한계, 구체적인 가해자 규명의 어려움, 시간적 한계 등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종보고서에서는 객관적 실태조사의 토대 위에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성이 규명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구두보고에서 언급했듯이 명확한 책임성 규명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가기관과 관료(state institutions and officials)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책임성 규명의 궁극적 대상이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주요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셋째, 국제공동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follow-up action)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서면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사항(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에서 각 주체별 후속조치에 관해 상세히 기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북한 인권실태의 객관적 검토를 넘어 개인 혹은 기관의 책임성 규명까지도 의도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수립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최종보고서에는 북한인권 관련 북한당국의 공과가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이다. 이번 구두보고에서도 최근 북한이 보여준 몇몇 긍정적인 변화가 언급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고 해도 공과에 대한 균형 있는 언급은 최종보고서의 객관성을 보다 강화시킬 것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최소한의 협조 가능성은 향후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과제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북한 당국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 될 것이다.

<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 경과 및 일정

일정	활동 경과
2013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22/13 채택: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결정
2013년 5월 7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위원 임명
2013년 7월 1일~7월 5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회동: 임무범위, 조사방법 등 결정
2013년 8월 18일~8월 27일	한국 방문 및 청문회 개최
2013년 8월 27일~8월 31일	일본 방문 및 청문회 개최
2013년 9월 17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구두보고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
2013년 9월 18일~9월 20일	태국 방문 및 조사활동
2013년 10월 23일~10월 24일	영국 방문 및 조사활동 예정
2013년 10월 29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구두보고 예정 (제68차 유엔 총회)
2013년 10월 30일~11월 1일	미국 방문 및 조사활동 예정
2014년 3월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 KINU 201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